

< 수시 공시 >

2010. 09.30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- 1) 신영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호(주식)
- 2) 신영마라톤 증권 자투자신탁 F1호(주식)

2. 공시 사유 : 모집합투자기구 규약 및 자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

3. 주요 변경 내용 : 자집합투자기구 신설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구조 등 변경

4. 변경시행일 : 2010.09.30./ 2010.09.29.
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